

韓國社會法學 30年の 回顧

朴 德 培*

一. 解放(1945年 8月 15日)과 우리의 法學界

우리가 日帝의 敗亡을 미리 미리 豫測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點에서는 意外로 빨랐다고 할 수 있는 面도 있다.

우리는 陰으로나 陽으로나 이에 對한 準備가 없었던 關係로 日本의 無條件 降服으로 우리 겨레의 生活이 一朝에 亂麻와 같이 混亂에 빠졌던 것을 想起하면 推測하기에 넉넉하다.

政治面에서 信託과 反託의 싸움, 政黨의 亂立, 左右 兩派의 對立, 經濟面에서 市場의 攪亂, 物價의 昂騰, 生産의 마비, 生産施設의 破壞, 勞組의 混亂, 三八線을 中心한 避難民의 混雜, 當時의 生活面은 그야말로 無法狀態였던 것이다.

人間生活에서 어느 것이든 平和없이 成就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社會가 있는 곳에 法이 있다」는 理는 이에서 理解할 수 있다. 그 中에서도 學問하는 生活은 가장 安定된 데서만 可能한 것이다. 社會의 混亂한 生活속에서 學問하는 길이 트이고 學問의 殿堂인 大學과 研究室이 安定될 理가 없다.

이와 같은 環境속에서 法學이란 日帝가 놓고 간 것을 그대로 延長시켜 가기에 辟차고 法學教育도 제 틀에 놓일 수 없었다. 그러니 어찌 社會法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大學은 雨後竹筍처럼 亂立되고 教授陣이나 學界에 規範이 成立되지 못하여 秩序가 形成되지 못하고 大學을 中心한 社會의 輿論도 當時 韓國社會의 一面相을 그대로 露呈하였다. 그것을 반드시 잘 했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이웃나라 日本만 하여도 그들이 明治維新을 成功裏에 成果를 거두기 위하여 歐美各國의 近代의 文化를 받아 들이려 할 때 무엇보다 大學의 必要를 切感하면서도 自己들이 大學의 中心人物이 되는 것을 避하고 初期에는 外國學者를 招聘하고 그들로부터 어느 程度 習得하고서야 自己들이 段階的으로 外國人 學者에 代替되는 方法을 썼다. 實例로는 日本의 東京帝國大學史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社會法」이라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 教科目으로 사용된 것은 日本 大學의 成長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 日本에서 最初로 大學 教科目으로서 「社會法」이라는 名稱의 講座가 設置된 것은 日本 東北帝國大學 法文學部에서 처음이다(1925年). 이것을 契機로 하여 日本九州帝國大學 社會法講座設置

* 前 서울大學校 教授

(1927年)로 發顯되거나, 或은 社會法講義科目(京都帝國大學 및 京城帝國大學)으로서 使用한 關係上 그 概念을 獨自的으로 明白히 해야 할 것이다. 이 點에서는 獨逸에서 바이말制定憲法과의 關係上 「統一勞動法」의 概念이 論議되었고 또 戰時 및 그 直後의 特殊한 經濟狀態를 背景으로 하여 「經濟法」의 概念이 構想됨에 이른 것과 多少 類似한 點이 있다.

이처럼 社會法域으로서는 日本이 여러 나라에 率先하여 「社會法」이라는 名稱을 使用하였다.

二. 社會法域의 形成(1848年~1914年)

(1) 社會法の 歷史는 比較的 짧다.

(ㄱ) 本質的으로는 近代資本制 社會의 成立에 依하여 비로소 그 發生 成立의 地盤이 주어진 新法理인 까닭이다.

(ㄴ) 「社會法」이라는 稱呼는 制度上의 命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一國의 法域 또는 一定法系에 對하여 學者가 現實的으로 呼稱한 데서 由來한다. 그 實例로는 社會法 發達の 端緒가 되는 「工場法」「工場立法」이라는 稱呼가 使用된 後 19世紀末 이미 「勞動者 保護法」이라는 稱呼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社會保險法改正結果(1911年) 社會保險이 從來의 勞動者 以外에 使用者에게도 擴充됨에 따라 단순한 勞動者法이라는 稱呼는 狹小하여 被傭者法 또는 被傭者保護法이라는 稱呼로 되어 勞動者保護法은 社會保險法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一國의 法規들을 包括하는 것으로서 社會立法 또는 社會政策的 立法이라는 稱呼가 使用됨에 이르렀다.

(ㄷ) 그러나 一次大戰前 勞動組合 등이 社會法 形成上 重要한 役割을 하므로 從來의 國家的 社會政策的 立法外에 特히 勞動協約, 經濟協約, 勞動者團의 自主的 立法이 重要한 意義를 獲得함에 이르러 社會立法 또는 社會政策的 立法이라는 用語는 一面的임을 드러내어 新稱呼로서 「勞動法」이 이들 全法域의 稱呼로 됨에 따라 制度上으로도 이를 採擇하게 되었다.

(ㄹ) 이와 同時에 大戰中 經濟生活의 變轉과 國家의 經濟統制가 契機로 되어 市民法理를 超脫하여 勞動法과 同一한 原理의 社會化經濟法(經濟法)의 問題가 法律生活 前面에 露現됨에 따라 勞動法을 內含하거나 또는 이와 並立하는 經濟法이라는 稱呼가 發生하였다. 以上과 같이 一般的으로 市民法理를 超脫하는 新法理의 體系가 「社會法」이라는 새 概念으로 登場하였다.

(2) 社會法이라는 稱呼에 對한 學說들

(ㄱ) 社會法은 만드시 制定法에서의 法典上 또는 制度上의 概念이 아니다. 主로 學者들 사이에서 學問的 見地에서 提起되고 이것이 一般 常識으로도 通用되어 「社會法」이라는 名目を 使用하는 경우 그 名目の 指示는 極히 多義的인 것은, 法 또는 法學에 關한 各種 異

說이 있음에도 基因하지만 社會法의 社會라는 概念이 極히 多義의임에 由來한다.

實例로는 社會道德, 社會教育, 社會問題, 社會運動, 社會經濟, 社會政策, 社會史 등에서 充分히 알 수 있다. 「社會가 있는 곳에 法이 있다」와 같이 法은 一般으로 社會生活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社會法은 社會에 關한 法」이란 成立의 根據가 없다.

究竟 社會法學의 問題는 一般 法學體系中에서의 限定된 意味에서 社會學의 名稱內에 包될 만한 價値가 있는 獨自의 課題를 究明하는 方法에 依할 수 밖에 없다.

(L) 法의 窮極의 任務가 個人에 自由를 公平히 保障하는 데 있다면 近代市民法이 걸이온 過程은 完全히 이에 背反하고 있다.

法의 歷史(人間歷史)에서의 無數한 悲劇은 그 形態야 多樣하겠지만 그 過程을 支配해 온 原理는 同一하니 그는 法本然의 性格에 違背되는 데서 招來되는 不公平性에 基因한다.

近代法이 人類의 心願이었던 個人의 自由를 實現하려고 自然法의 旗幟下에 進軍한 것은 一大 偉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歷史는 超個人的으로 自己 自身の 必然法則에 따라 變轉한다. 經濟構造와 社會構造의 變遷은 獨占財閥과 無產層의 形態로 나타났다. 自由의 守護神으로 自進했던 近代市民法은 權利主體로서는 自由이고 平等이지만 生活하는 實際 人間으로서는 物權의 客體化되고 商品化되고 말았다. 近代法은 法으로서의 本質이 抹殺된 法의 不在 以外の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떤 法規範이든 法의 規範力을 發揮할 그 무엇이 要請된다. 公法과 私法外에 또 다른 세 法規範의 要望은 人間生活에 있어서 絶對的 要請이다.

公法도 私法도 아닌 새 法이 있어야할 時點에 符應할 수 있는 法이 바로 社會法이라는 名稱으로 나타났다.

(C) 오랜 동안 神秘主義的이고 拘束的인 中世法의 世界에서 解放된 近代法이 1804年 佛民法으로 發顯될 때에는 一旦 法本然의 任務를 遂行했다. 法의 本質로서의 強制力의 妥當의 根據는 人間의 意思에 뿌리를 뻗고 있다. 從範者의 그 法規에 對한 支持度에 따라 그 強制度가 決定된다. 이런 點에서 近代法은 資本主義가 成熟해 גיע 따라 法本然의 任務에서 離脫하여 가고 있었다.

英國에서 시작된 勞動運動은 바로 이에 對한 가장 有力한 證據가 아닐 수 없다.

中世의 團體法에서 近代市民法에로 發展한 法規範은 1776年의 美國의 獨立宣言과 1789年의 佛蘭西의 權利宣言을 거쳐 1804年의 佛蘭西民法에서 名實共히 近代社會의 基本法으로 確定된에 이른 것이다. 以來 獨逸民法, 西瑞民法 등을 通하여 資本制社會의 憲兵役割을 充實히 遂行하였다.

資本主義가 第一 먼저 發展한 英國을 필두로 獨逸, 佛蘭西, 日本, 伊太利, 美國 등의 資本主義가 成熟함에 따라 企業集中形態는 獨占財閥로 發顯되고 한편에는 無產階層으로 나타

나, 中産層의 沒落은 어떤 一國에 限한 問題가 아니라 人類全體의 悲劇으로 一大問題化된 것이다

植民地戰爭에서 帝國主義戰爭으로 擴大되어 資本主義 國家群이 地球를 分配하려는 一次大戰으로 結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가 그 自體의 進路에 있어서 成長하기 위한 必須條件으로서 資源과 市場의 擴大는 獨占財閥과 社會的 階層으로 成熟한 勞動層의 二大陣營으로 敵對關係에 서게되고 이는 結局 二次大戰을 誘發하고야 만 것이다. 1919年 平和條約 第13篇에서 國際勞動憲章이 締結되고 I.L.O.가 設立되어 沉世界的인 課業을 目下科學的이고도 實際的인 面으로 努力하고 있는 現實은 바로 「社會法」이 어떤 法域이나에 對한 對答이 된다. 社會法은 「平和의 法」, 「새 時代의 法」이라고 呼稱하는 今日的 現實은 恰似하게도 社會法時代라고도 할 수 있다.

(근) 一般的으로 社會法은 個人主義 文明에서 社會的 文明으로의 變遷에서 法律的 局面에 發現된 現象을 意味한다.

특히 一般的 見解로서는 社會에 있어서 全과 個와의 關係에 對하여 各個人의 利益을 重視하는 法理를 個人法이라고 함에 對하여 社會의 統一의 全體性的 優位下에서 個人的 利害를 從屬시키는 法原理를 「社會法」이라고 한다. 公共의 「福利」라거나 「信義誠實」의 原則은 本來的으로 健全한 人間社會에는 必須不可缺의 命題이지만 近代市民社會가 自然法思想을 그의 發판으로 하여 하나의 새 時代를 創建하는 데는 그 나름의 要請이 成立된다.

宗教改革으로 나타난 歷史의 中心은 教團의 橫暴와 腐敗를 除去시키려는 人間의 念願으로 露現되고 이에서 「내가 祈禱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神이 같이 하신다」의 「나」는 近代個人主義를 宣稱하는 場面이고 Descartes의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있다」의 「나」는 Bacon의 歸納論과 아울러 個人主義를 盤石위에 세웠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事實은 歷史發展의 自己必然의 法則이며 超個人的인 것이다. 그러나 元來 「나」라는 것은 「나」가 認識되고 하나의 命題로 成立되기 위하여는 實은 「너」가 前題로 되고 原因이 되어야 비로소 可能하다. To err is human이라고 하거니와 人間의 制度는 어느 하나라도 完全한 것은 없고 不安全한 것이 그 本質인 것이다. 家父長制이며 全體主義에 對한 억겨움은 오랜 歲月속에서 徐徐히 자라, 그 突破口가 1786年の 宣言으로 出現되었다.

「나」自身の 存在, 個人의 尊嚴性이 確立된 것은 歷史의 意味에서는 確實히 하나의 새 時代를 創建한 價値를 認定해야만 한다. 그러나 民法上의 無能力者制度라거나 去來上에 있어서 善意의 第三者라거나 一步進하여는 오늘과 같은 產業構造에서 企業이 社會와 人間에 對한 關係에서 非人間化, 人間의 疎外, 人間의 商品化는 高貴한 人間의 努力으로 얻은 個人의 自由를 抹殺시키고 만다.

第一次大戰의 結果, 人間은 近代文明에 對하여 反省하고 再吟味하는 努力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悲慘한 人命의 殺害, 莫大한 文化遺產의 破壞와 人間의 物權化로 自由가 極少數

獨占財閥의 專有物이 되고 一般人은 奴隸化에 떨어지고 말았다.

勞働은 原料와 같이 企業集合物의 하나로 轉落되고 近代의 多數人은 自由가 事實上 약탈되어 法의 保護밖엔 서게 되었다. 바이말憲法에서 「貧困」을 理由로 한 契約은 無效라거나 財産을 社會化宣言한 것은 近代法에 對한 一大 挑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近代法이 法으로서의 正義를 實現할 수 없게 됨에 따라 勞働運動이 燎原의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하였다. 法의 窮極의인 存在는 正義이며 正義에서만 人間의 法的良心은 妥當의 根源을 찾으며 이것이 強制力의 根源이다. 法의 價値理念으로서의 正義는 「같은 것을 같이」 다꾸며 「그의 것을 그에게」로 作用하는 限에서만 그 使命을 다할 수 있다. 「없는 것을 怨望하지 않고 같이 않은 것을 怨望한다」는 말은 法의 理念으로서의 正義를 가장 簡潔하게 說明한 것이다. 法이란 하나의 生活條件으로서 自由를 萬人에 公平하게 保障할 때에만 法의 本質로서의 強制力이 發動된다.

人間의 幸福은 各自의 自由에 正比例하고 그에 反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 法에 反對하기 때문에 歷史上의 數多한 革命의 慘劇은 當時의 그 法에 服從하면 不幸 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判定될 때 聰明하고 勇敢한 人間들은 죽음으로 그 法에 反對함에 있다.

佛蘭西의 大革命, 東洋社會의 無數한 變亂은 이의 한 實例라 하겠다. 우리의 4·19도 바로 이에 屬한다.

人間의 尊嚴性이 Kant에 依하여 確立되고 市民社會의 成立으로 實證化되었다. 萬人이 오랜 歲月속에 拘束의 生活을 하다가 個의 解放을 通하여 個人的 發見으로 自由를 贊揚하였지만 資本主義의 發展은 위에서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全體 人間의 極少數인 獨占財閥만이 自由를 누리고 그 以外의 人間은 使用價値의 存在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서 法의 理念體로서의 正義는 抹殺되니 法의 強制力이 發揮될 수 없다. 法의 強制度는 從範者의 支持度에 依하므로 그 法에 服從함으로써 自己와 自己의 一家族이 不幸에 떨어진다든 事實이 明白한 以上은 人間은 죽음으로 그 法에 反抗한다. 近代市民法下에서 資本主義가 成熟해감에 따라 그 法에 抵抗하는 勞働運動이 惹起되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다. 社會法이라는 法域이 發生된 것은 公法이나 私法으로는 正義가 實現되지 못하므로 새 法域으로서의 社會法이 提起되는 것은 歷史의 必然的인 現象이다.

三. 우리 나라 社會法

(1) 지금도 淸溪川 6,7街에 즐비한 古本屋에 가보면 最新 書籍속에 손대기가 어려운만큼 塵埃에 과묵히 있는 古本을 찾아볼 수 있다. 마치 골동품과도 같은 古本은 그 表紙와 印刷體制가 當時의 우리 學界를 雄辯의으로 說明해 준다. 그 當時의 法學敎材는 日本人敎授들의 것이 直譯版으로 나와 있었다. 日本語는 우리가 오히려 日本人보다도 잘한다고 그들의 입을 通해 늘 빈정대는 語調로 멸시됐던 것이다. 實例로는 東北帝國大學 民法總則 時

間에 勝本正兒教授가 「朝鮮人は日本人인 우리보다도 日本語를 잘한다」고 하여 우리 나라 學生과 一大亂鬪가 벌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日人 教授들의 法律學 教材를 번역한 것을 보면 너무도 直譯이므로 不自然한 것을免키 어렵다.

이와 같은 事實은 結局 當時의 우리 大學環境의 赤裸裸한 모습을 說明해 주는 것이니 얼마나 急하고 大學生活의 全面에 걸쳐 모든 條件이 絶박하였던 것이었던가를 알아볼 수 있는 實例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解放當時 甞지 못할 事實은 社會 全般에 걸쳐 하나의 一般的인 現象이었다. 아무런 準備도 없이 日帝에서 解放된 우리 나라의 形便이 各部門의 社會生活이 混沌을 거듭하고 있는 中 唯獨 大學生活만이 安定되고 沈着한 研究生活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大學이 警察署의 派出所보다 많고 教授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職業으로 생각하게 되니 그에 對한 尊敬心이나 期待는 勿論 찾아 보기 힘들고 그에 對한 輕視는 말할 것도 없었다.

(2) 大學에 對하여 社會가 이러하니 大學當局도 그러하였고 教授自身들도 自重自愛의 態度에는 不足함이 많았다. 이와 같은 當時의 學界를 實證하고 남음이 있는 實例를 하나 들어서 우리 大學人의 앞날을 위한 參考로 하였으면 한다. 1955년부터 計劃된 法律學全集이 民衆書館에서 出版되어 市販이 시작되기는 1956年이라고 기억된다. 民法學이 제일 먼저 出版되고 그에 이어서 勞動法이 出版되었다. 1956年 12月 31日付로 「社會序說과 勞動法」의 名稱으로 出版된 勞動法이 市販의 햇빛을 보게 되었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의 一般社會科에 在職中인 朴德培 教授에 依하여 科의 教材로서 出版되어 慣例에 따라 出版社側의 原意로 武橋洞 太華樓에서 小竅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執筆者인 朴德培 教授와 出版社側의 責任者 正副 二人이 出席하였다.

座席의 醉興이 무르익었을 때 主催者側의 한 분이 著者에 對한 質問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여도 도저히 著者 혼자만 아는 것으로 默過하기에는 너무 甚刻性을 느끼기 때문에 勞動法教授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事實을 털어 놓고는 한바탕 웃었으며 解放當時의 大學社會를 회고하는 자료로 삼았다.

問題의 質問은 「法律學 中에는 兩班法律學이며 훌륭한 法律學이 많은데 어째서 당신(朴教授)은 이와 같은 쌍놈의 法律學을 研究하였느냐」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弄調로 재미롭게 하는 말이라면 여기서 再論할 問題性이 없겠지만 그 質問의 全體 분위기로 보아 甚刻하고도 教訓調였었다. 著者는 실로 당황하였고 對答에 窮하였다.

그 質問者도 大學 教授級의 한 사람이고 出版社의 副責任者인 분이다. 「제 故郷이 黃海道이고 黃海道에는 兩班이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쌍놈이기 때문에 쌍놈이 쌍놈의 法律學이나 공부하지 어찌 敢히 兩班의 法律學을 공부하겠습니까?」고 著者 自身 마음이 십십하고 못

마땅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볼썽 건디다 못하여 이와 같이 좀 反抗의이며 무시하는 語調로 대답했다. 그래서 相對者가 낮이 붉어지고 미안하다는 態度를 가지게 되어 座中에는 暫時 동안 어색해졌었다.

如何튼 이와 같은 事實은 韓國勞動法의 歷史에 充分히 歷史的 價値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勞動法 教授들도 同感이었기에 이에 簡單히 기록한다.

지금으로부터 七年이나 八年前的 일인 것 같은데 釜山地方으로 勞動法 세미나次 同行하던 白宰奉教授와 別負擔없이 談話中 汽車內에서 一大爆笑가 터졌던 事實이 있으니 그는 곧 지금의 「勞動法은 쌍놈의 法」云云하던 民衆書館 責任者(單行本 責任者라고 함)의 事實에 言及한 때의 일이다. 그때 白宰奉 教授가 「이와 같은 事實은 韓國勞動法學史의 貴重한 價値가 있으니 以後 韓國勞動法學史를 쓸 때에는 꼭 記錄되어야 할」 것이라던 것이 지금 想起된다.

(3) 日帝에서 解放된 우리 나라 大學에서 언제부터 社會法이나 勞動法 또는 經濟法의 講座가 設置되었으며 언제부터 實際로 講義가 시작되었는지 그 자세한 記錄을 얻어보기가 甚히 어려웠다.

나로서는 그래도 한국의 社會法史를 正確하게 記錄하여야 할 事實을 認識하고 時間도 消費하고 努力도 하느라고 했지만 原稿提出 期日에 쪼들리어 調查하다가 中斷하고 우선 原稿을 提出하고 말았다.

내가 調查한 데 依하면

(1)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는 解放直後 곧 社會法의 講座를 1946년부터 設置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實際 講義는 어느 教授에 依하였는지 알이불 도리가 없다. 다만 沈泰植 教授에 따르면 1956년부터 沈教授가 講義를 한 事實以外에는 아는 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 社會法 講義가 언제부터인지는 좀더 調查하여야 할 것이다.

(2) 高麗大學校에서는 普成專門이 高麗大學校로 歷史的인 發展을 하면서 社會法 講座가 正式로 設置되니 그것이 바로 高麗大學校로 發足한 1948년부터라고 한다.

金振雄教授에 따르면 當時 社會法의 講座名으로서 尹鍾燮教授(以北으로 갔다고 함)가 擔任하였고 高麗大學校 商科大學에서는 벌써 社會法으로서가 아니고 勞動法 또는 經濟法의 講座를 設置하고 그에 따라 講義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筆者로서는 解放後 30年間的 우리 나라의 社會法史는 그 端初를 高麗大學校에서 찾아볼 도리밖에 없다.

(3) 社會法이나 勞動法 또 經濟法中 어느 名稱에 依해서든 韓國에서 講義를 시작한 것은 아마도 高麗大學校 法科大學에서 시작한지 10년이 지나서야 他大學에서는 하나 둘씩 實施된 것이라고 斷斷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노동법을 「쌍놈의 法」으로 생각하는 社會風潮를 집착하기에 充分하다. 筆者는 責任上 좀 더 確實을 期하기 위하여 實際 證憑資料에 따

라 그 實況을 알아보려고 筆者나름으로는 努力하기로 하고 圖書館 또는 大學 敎務에 備置해 둔 書類를 뒤지기도 하였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30年」(1945—1975)에 따르면 1949年度 敎科課程에 社會法 第一部 또는 第二部를 必須로 하고 있다. 1952年度 敎科課程에서도 行政學科와 法律學科에 社會法의 名稱으로 講座가 設置되어있다. 但 社會法을 第一, 第二로 나누었는데 그 內容이 무엇인지는 調査할 時間이 없었다. 筆者는 推測으로는 勞働法이나 經濟法을 指稱함이 아닐까 한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는 1949년부터 이미 社會法講座는 設置되었지만 實際講義는 1959년부터 沈泰植敎授가 最初로 實施한 것 같다.

(ㄱ) 韓國에서 社會法이 어떤 過程을 거쳐 今日에 이른지를 알아보려고 以下와 같이 調査한 內容을 소개한다. 原稿의 督促은 甚하고 資料는 求得하기가 어렵고 참말 公表하기에는 약간도 미안하지만 그런대로 아래의 같은 調査資料만을 發表키로 한다.

金麗洙 「社會法의 概念」 考試界 8(2)63 155-160.

「社會法의 概念」 論文集(成大) (6)61:103-116.

金永澈 「社會法의 理論的 展開」 人文社會科學篇(忠南大) (4)65, 5

金 喆 「經濟法과 (公共福祉) 등의 一般條項에 대한 考察」 기업조사원보 (54)72 2

金 辰 「不當勞働行爲의 救濟策」 企業經營 (66) 63 15-18

金致善 「經濟法組成에 關한 一考」 法大學報(서울大) 4(1)57, 7

「經濟法의 比較學的考察 獨逸篇」 考試界 3(4)58, 5

「勞働立法의 目的과 그 方向」 法政 14(3:8) 52, 5

金亨培 「團結強制 交涉代表 組合民主主義」 法制月報 5(9)63 50-60.

「韓國勞働委員會의 問題點」 法行論集(高大) (4)63 231-265.

沈泰植 「強制勞働, 中間搾取의 禁止와 勞働契約에 關한 各項의 強制와의 關係」 考試界 9(8) 64, 8

吳貞根 「社會法을 배우는 學徒에게」 考試界 (4)62 125-131.

鄭範錫 「社會法과 그 立法傾向」 建大學報 (6) 60 12 52-72.

黃迪仁 「經濟法의 概念과 本質」 法政 25(4) 70 4.

以上の 論文以外的 것은 學術論著 總合索引 1945~1972 第一輯 法律學 國立中央圖書館 參照.

國內刊行物記事索引(1945年—57年)(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58~1959)

李鍾河 「勞働法解釋의 方法論 公務員의 團結權에 論議에 關聯하여」 法學論集(大邱大) 1/1 17-24.

李恒寧 「勞働法學界의 回顧와 展望」 法政 15/1 19-21 國內刊行物 記事索引 第一卷 第一號 1960 1-3.

(ㄴ) 韓國 社會法의 今日까지의 實態를 論함에 있어서 꼭 論及하여야 할 事實이 있으니

우리나라 國家考試科目名中에서 社會法의 名稱을 勞動法이나 經濟法 등으로 具體化할 것을 提言한 事實이다. 筆者가 韓國勞動法學會의 會長이 되어 곧 政府 總務處長官을 訪問하고 社會法이란 名稱을 적어도 國家考試 科目으로 實施한다면 國家體面上 問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中止해 주길 要求한 일이 있다. 이것이 奏效한지는 確認하지는 않았지만 命令 2405號(1966. 2. 7) 公務員 任用實行令에서 二次 試驗에서는 勞動法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社會法이라는 概念內에 勞動法과 經濟法을 包括시키는 理由로서는 社會的 弱者를 위한 法規範의 體系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說에 一致하지 않고 勞動法과 經濟法 새에는 彼此相反한 것을 內容으로 한다고 하며 兩者는 하나의 同一한 內包가 되지 못한다고 主張하는 學者가 있다. Kaskel같은 사람은 社會法은 오직 勞動法뿐이라고 主張하였다. 只今도 社會法이라는 名稱을 使用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勞動法學會에서도 國際社會에서 使用하지 않는 名稱을 避하려고 政府에 提案했던 것이다.

(ㄷ) 우리 憲法은 建國以來 第一共和國 憲法에서부터 「公共福利」下에 모든 法規範은 施行되어야 하고 信義誠實은 民法만에 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法規範 全體의 指導原理가 되는 것에 想到하면 社會法이나 勞動法의 成立根據가 그대로 우리나라 法 全體의 原理이며 法思想으로 高揚된 것을 承認하여야 한다.

以上에서 우리의 社會法은 公法域과 私法域 外의 新法域으로서의 社會法域이라는 하나의 法域이 있다는 것이 現行 우리 國家法秩序 全體의 基本精神이라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社會法의 發展은 純粹 法律學的 面에서만 본다면 世界의 最尖端을 辿고있는 新法思想이라고 하여 무방하다.

(ㄸ) 끝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最初로 出版된 朴德培著 「社會法序說과 勞動法」은 當時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本著의 參考될 만한 다른 勞動法이나 其他書籍이 全無하였을 뿐만 아니라 他國의 新刊著書조차 輸入이 되지 않았었던 關係로 나 自身으로서는 하나의 모험이고 勇敢性을 지니고 있는 著書라 하겠다. 지금도 本著를 읽을 때에는 自己의 信念이 無知의 所致인 듯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程度 勞動法(社會法)의 精神이 一貫된 것 같아서 호뭇하다. 參考삼아 그의 目錄만을 첨부하여 과연 著者의 社會法精神이 어느 정도인지 高明한 批判을 仰慕한다. 이 著書가 出版된 以後로 相當한 時日의 經過를 기다려서 社會法(勞動法) 教材가 出刊되고 學位論文도 하나 둘 나왔으며 지금은 碩士가 一年에 數十名씩 輩出되고 外國에서 研究한 學者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韓國社會法學界는 무지개와 같이 빛나고 있다. 學問의 價値는 時間的으로 빨리 發表되었다고 認定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筆者의 이와 같은 早期發表는 空然히 無知의 탓으로 虛亡한 學說을 主張한 것은 오히려 學界에 가뭇—유다와 같은 피해 밖에 없으며 수치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감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目錄을 발표하니 오직 當時의 우리 나라 法學界의 情景를 살피는 資料로 삼아주기만 바란다.

次 例

第一編 社會法 序說

第一章 人間의 生活規範으로서의 法律

第一節 序 論

- (一) 歷史와 人間生活
- (二) 人間生活와 法律制度

第二節 法律人의 型

- (一) 法律制度와 人間行態
- (二) 行態主體로서의 人間과 價値
- (三) 人間이란 곳 社會인 것
- (四) 社會成立의 터진으로서의 個別我의 意識
- (五) 生産樣式에 따른 法律制度의 變遷
- (六) 近代市民法의 始源으로서의 人權宣言

- (七) 宗教와 道德으로부터 法律의 獨立 (個別我의 自己發見)

- (八) 所有의 資本化와 商人層의 法秩序로서의 商法의 發展

- (九) 勞動階層의 發生과 法規範의 乖離

- (十) 觀念的이고 抽象的인 自由와 平等에서 實質的인 平等의 實現

- (十一) 生活하는 人間 그대모를 捕捉하는 社會法의 出現

第三節 法의 本質

- (一) 社會法의 立場에서 要請되는 範圍에 限하여

- (二) 正義는 社會一般人의 生活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法規範을 通해서만 이룩된다.

- (三) 近代法의 矛盾

- (四) 自由의 참뜻

- (五) 法律의 本質인 權利가 義務로 轉化해야 한다.

- (六) 權利에서 社會作用으로

- (七) 統制의 本質은 法의 本質의 機能

이다.

第二章 社會法

第一節 社會法의 性格

- (一) 새로운 法規範이 아니고는 捕捉할 수 없는 社會的 具體人의 一團

- (二) 社會法의 範圍

- (三) 社會法은 自由의 醇化

- (四) 法律은 政治에 依해서 그 目的을 達成한다.

- (五) 社會法의 受範者로서 社會的 具體人

- (六) 社會法 發現基底로서 經濟와 社會問題의 關係(公法과 私法에서 社會法領域의 生成을 中心으로)

第二編 勞動法

第一章 序 說

第一節 勞動法의 略史

- (一) 勞動立法의 概念

- (二) 勞動의 受給關係의 變遷

- (三) 不自由 勞動의 思想

- (四) 勞動 賃貸借의 思想

1) 羅馬時代

2) 게르만時代

3) 羅馬法繼受時代

- (五) 雇傭契約 思想

- (六) 勞動契約의 特徵

- (七) 勞動法의 成立史(勞動法生成의 理論의 根據)

- (八) 英國의 勞動法 發展相

- (九) 美國의 勞動法 發展相

- (十) 佛蘭西의 勞動法 發展相

- (十一) 獨逸 勞動法의 發展相

- (十二) 勞動法의 本質을 가진 法典의 確立時代

- (十三) 勞動法의 後退

- (十四) 勞動法 原理의 世界統一化 傾向

- (十五) 大韓民國의 勞動法 發展相
- 第二章 勞動法의 本質
 - 第一節 勞動法의 概念
 - (一) 從屬勞動 關係
 - (二) 勞動契約의 法律的 特色
 - (三) 勞動法의 法源
- 第三章 勞動基本權
 - 第一節 國民의 勞動權
 - (一) 勞動權은 受益權이다.
 - (二) 勤勞條件의 法定
 - (三) 女子와 少年의 保護
 - 第二節 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爲權
 - (一) 企業主人 使用者와의 均衡이 必要
 - (二) 團結權
 - (三) 團體交涉權
 - (四) 團體行爲權
 - (五) 缺格者
 - 第三節 不當勞動行爲
 - (一) 資本獨占에 對한 勞動의 獨占
 - (二) 不當勞動行爲의 種類
- 第四章 勞動團體法
 - 第一節 序 論
 - 第二節 勞動組合
 - (一) 勞動組合의 意義
 - (二) 勞動組合의 設立
 - 第三節 勞動協約
 - (一) 勞動協約의 社會的 意義
 - (二) 勞動協約의 成立
 - (三) 勞動協約의 有効期間
 - (四) 勞動協約의 性格
 - (五) 勞動協約의 効力
 - (六) 勞動協約의 消滅
 - (七) 經營協議會와 紛爭處理機關
 - 第四節 勞動爭議
 - (一) 勞動爭議의 意義

- (二) 勞動爭議의 調整
- (三) 爭議行爲
- 第五章 勞動保護法
 - 第一節 勞動保護法의 構成과 性格
 - (一) 勞動保護法의 性格
 - (二) 勞動保護法의 對象
 - 第二節 勤勞基準法
 - (一) 勤勞基準法의 意義
 - (二) 勤勞基準法의 原則
 - (三) 適用範圍
 - (四) 使用者의 定義
 - (五) 社會法上의 責任
 - 第三節 勤勞基準法의 內容
 - (一) 目的
 - (二) 勤勞條件의 基準(第二條)(原則其一)
 - (三) 勤勞條件의 決定(第三條)(原則其二)
 - (四) 均等處遇(第五條)(原則其三)
 - (五) 強制勞動의 禁止(第六條)(原則其四)
 - (六) 中間搾取의 排除(第八條)(原則其五)
 - (七) 公民權行使의 保障(第九條)(原則其六)
 - 第四節 勤勞者의 利益均霑權
- 第六章 勞動委員會
 - 第一節 勞動委員會의 構成
 - (一) 勞動委員會의 種類
 - (二) 勞動委員會의 組織
 - (三) 勞動委員의 任期와 委員長
 - 第二節 勞動委員會의 會議
 - (一) 委員會의 召集(第十條)
 - (二) 會議
 - 第三節 權 限